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10월 16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0월 16일(월)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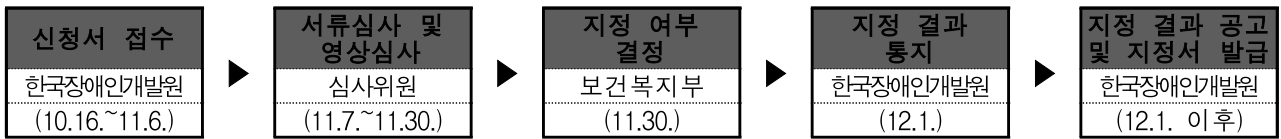
- (기관의 역량) 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 조직구성의 전문성, 기관장 의지 등
- (교육 운영 적정성) 계획 수립 충실성, 교육 운영 강사의 역량 등
-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교육 교재 및 교안의 적정성, 교육기관 환경의 적정성 및 훈련 노력도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 심사하게 된다.

-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 지정 절차>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기간은 10월 16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http://www.kod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알림>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앞으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개요**
2. 공고 내용(공고문 내용 발췌)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담당자	서기관	최기전 (044-202-3301)
담당 부서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책임자	원 장	이경혜 (02-6951-1790)
		담당자	팀 장	김재형 (02-6951-1793)



□ 지정 개요

- (추진배경)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하여, 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효과적 질 관리를 위한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필요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등
- (지정기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기관의 역량, 교육 운영 적정성,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등
- (주요역할)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계획 수립, 양질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또는 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보관, 인식개선교육기관별 소속 강사 역량강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고 등

□ 지정 혜택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상‘교육방법 및 활용’항목 만점 부여
 - (실적배점표 도입)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실적 점검 제도 도입
 - * 실적배점표 점검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경우 부진 기관으로 언론 등에 공표 예정
 - 인식개선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은 기관의 경우, 30점 배점 중 30점 만점 부여

1. 공모 기간: 2023. 10. ~ 12. (지정 신청 ~ 지정 결정)

2. 신청 자격 및 절차

가. 신청 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로 전문강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인식개선교육 역량을 갖춘 곳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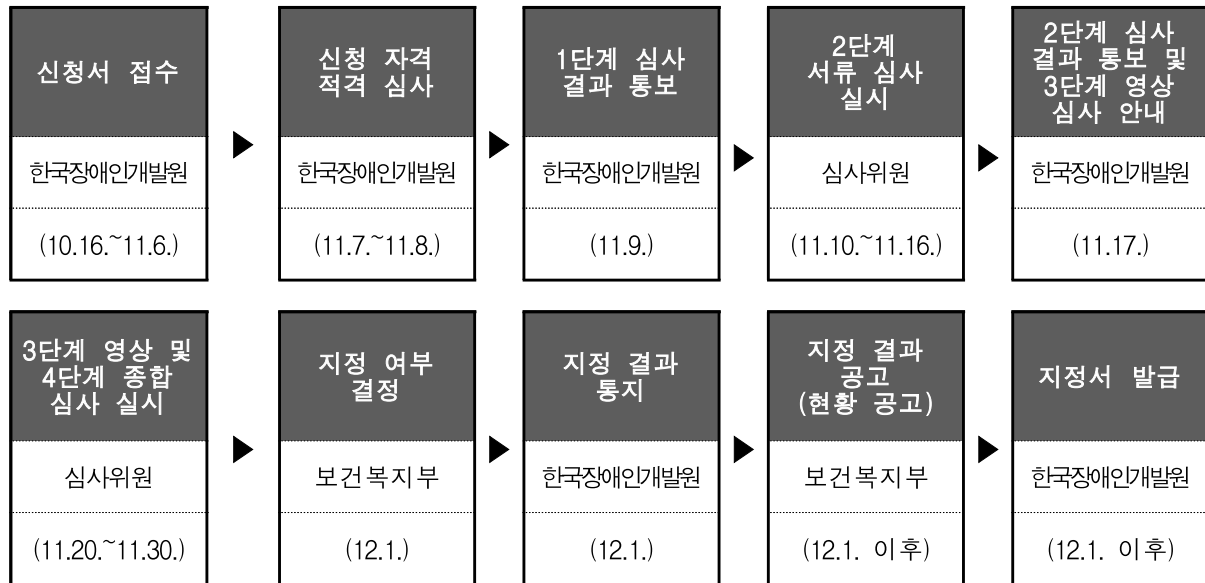
나. 신청서 제출

- 접수 지역: 전국 전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선정 개소: ○○개소
 -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개소 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출 기간: 2023. 10. 16.(월) ~ 11. 6.(월) 12:00까지
- 제출 서류: 인식개선교육기관 신청서, 교육 운영 계획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제출 서류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 가능

○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 제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담당
 - 이메일: able-edu7@naver.com
 - 서류 제출 완료에 대한 회신을 접수 후 24시간 이내 드릴 예정이오니, 회신 메일 확인 필수

다. 단계별 세부 지정 절차(안)



라. 지정 결과 발표

- 결과 발표: 2023. 12. 1.(금) 예정
-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 알림 → 공지사항